

분쟁 해결

워싱턴 주에서 모든 학생은 차별없이 공교육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직원 또는 지역사회 일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차별 또는 차별성 보복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할 경우, 이러한 우려사항을 해결하고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행위 또는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차별은 한 개인이 법에서 **보호대상(protected class)**으로 규정한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불공평 또는 불평등 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호대상이란 공통 특성을 공유하며 연방 및 주정부 법에 따라 차별 및 부당행위로부터 보호를 받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집단에 워싱턴 주 법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간주됩니다.¹

인종 및 피부색	성적 취향
출신국	성별 표현
종교 및 신념	성 정체성
성	재향군인 또는 군인 신분
장애	훈련견 또는 도우미 동물 사용

차별적 부당행위는 보호대상 특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부당행위를 의미합니다. 차별적 부당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 소문을 퍼뜨리거나 욕을 하는 행위, 경멸성 농담, 신체적 폭력, 신체적으로 위협이 되거나 위험하거나 치욕스러운 기타 행위 등을 차별적 부당행위의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OSPI 평등 및 시민권 사무소(Equity and Civil Rights Office)에서는 시민권법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질문의 답변해드리고 귀하녀의 학교 차별과 관련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관에서 누군가를 대신 해 법적 조언이나 법적 대변을 제공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십시오.

360-725-6162 | TTY 360-664-3631 | equity@k12.wa.us

시민권 준법준수 전담관(Civil Rights Compliance Coordinator)과 상의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장 또는 해당 교육구의 시민권 준법준수 전담관과 협의를 통해 차별에 대한 귀하의 우려사항 또는 이의사항을 처리하고 해결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상기 관련자들은 학교에서 제공해야 하는 모든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귀 자녀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첫 단계**를 통해 귀하의 문제에 학교 관리자가 관심을 갖게 되고 실질적이고 유익한 해결책을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차별 및 부당행위를 이해할 때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또한
- 학교장 또는 전담관에게 **귀하가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는 것**을 알리도록 합니다.

시민권 전담관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차별 및 차별적 부당행위와 관련한 분쟁 및 우려사항을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학생 가족, 교육구 및 교직원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담당 교육구의 시민권 준법준수 전담관에게 연락하십시오. 연락처 목록은 OSPI 평등 및 시민권 사무소의 웹사이트 www.k12.wa.us/Equity/ContactList.asp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¹ 챗터 28A.642 RCW,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42>. 챗터 28A.640 RCW, <http://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28A.640>.
챗터 49.60 RCW,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49.60>.



분쟁 해결

보호대상 관련 차별행위의 경우 민원을 제기하십시오²

워싱턴 주에 소재한 공립 학교 내에서 보호대상 관련 차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라도 공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 학생, 교사, 관리자 및 대변인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중요! 특수 교육, 연방 교육 프로그램 또는 공인 교사 또는 교육자의 전문가답지 못한 행위와 관련된 민원은 해당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 해당 민원 제기 절차에 대한 내용은 5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민원제기 절차를 엄격히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교육구 또는 차트 스쿨로 가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민원내용을 작성하십시오.

1. 해당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무엇을, 누가, 언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이용하십시오.
2. 귀하가 차별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3. 귀하가 생각하기에 해당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기재해 주십시오.

작성한 민원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을 통해 교육감, 차터 스쿨 관리자 또는 시민권 준법준수 전담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OSPI는 모든 워싱턴 주 교육구의 웹사이트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는 <http://www.k12.wa.us/Maps/SDmainmap.asp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민원 제출 마감일

교육구 및 차터 스쿨은 민원 제출 마감일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민원 대상인 사건 또는 행위가 발생 후 **최소 1년** 후가 되어야 합니다. 담당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이 차별 관련 민원 제기 시 마감일을 지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2단계.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에서 귀하의 민원을 조사하게 됩니다.

담당 교육구 또는 학교측에서 귀하의 민원을 접수하고 나면, 담당 시민권 준법준수 전담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담관은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차별관련 민원 시 따라야할 절차서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 여기서 귀하는 조사를 진행하는 대신 귀하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역일 기준 30일 및 마감일 연장

담당 교육구 또는 학교에서 귀하의 민원을 접수하면, 귀하가 다른 기간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행정관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귀하의 민원이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례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담당 교육구 또는 학교는 귀하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 시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2)** 서면 답변을 제시할 새로운 일자를 제시해야 합니다.

² WAC 392-190-065, <http://apps.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065>.



분쟁 해결

3단계. 교육구 또는 학교에서 귀하의 민원에 답변을 드립니다.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교육구 또는 학교측은 다음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조사 결과 요약
- 해당 교육구 또는 학교가 시민권법을 준수하였는지 아닌지 여부를 명시한 결정내용
- 본 결정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 공식 이의제기 방법, 장소 및 제출대상
- 조사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담당 교육구 또는 학교측이 시민권법 준수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경우, 귀하가 다른 일정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중재

중재 또한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워싱턴 주 법에 따라 교육구 또는 학교측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정한 중재자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³

중재과정은 학부모 및 후견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중재인을 통하기로 선택할 경우, 담당 교육구 또는 학교측이 귀하의 민원에 응답해야 하는 역일 기준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 OSPI는 중재를 통해 도달한 합의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장하거나 강제로 집행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십시오.

귀하의 차별 민원에 대한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십시오⁴

교육구 및 학교측은 항소 과정을 포함한 민원 제기 절차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는 본 민원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관리자 또는 위원회가 맡아야 합니다.

교육구 또는 학교 측이 귀하의 민원을 조사한 후 내린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의 신청 절차를 엄격히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교육구 또는 차트 스쿨로 가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공식 이의제기 방법, 장소 및 제출 대상을 포함한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정보는 담당 교육구 또는 학교에서 조사를 완료 한 후 귀하에게 발송하는 답변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의 신청 마감일

교육구 및 학교측은이의 신청 마감일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귀하가 공식 민원을 제기하고 이루어진 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수신할 일자로부터 **역일 기준 1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담당 교육구 또는 학교측이 이의 신청 시 마감일을 지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의 신청 시 역일 기준 30일 내에 답변이 제시됩니다.

담당 교육구 또는 학교에서 귀하의 민원을 접수하면, 귀하가 다른 일정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행정관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중요! 이의 신청 결정문에는 OSPI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의 신청 결정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워싱턴 주 법에 따라 OSPI에 공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³ WAC 392-190-0751, <http://apps.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0751>.

⁴ WAC 392-190-070, <http://apps.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070>.



분쟁 해결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OSPI 민원 제기⁵

1단계. 민원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주정부 차원의 민원절차는 지역 민원 및 이의제기 절차 이후 진행됩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별도의 민원 절차입니다. **(1)** 신청인이 담당 교육구 또는 학교측에 대한 공식 민원 및 이의제기 절차를 완료하였거나 **(2)** 담당 교육구 또는 학교가 민원 및 이의제기 절차를 올바르게 시행하지 않음.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해당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무엇을, 누가, 언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이용하십시오.
- 귀하가 차별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우편 주소를 포함하여 귀하의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해 주십시오.
- 민원 제기 대상인 교육구 또는 학교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해 주십시오.
- 담당 교육구 또는 학교에서 보낸 민원절차 결정문 및 이의절차 결정문 사본을 동봉해 주십시오.
- 귀하가 생각하기에 해당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기재해 주십시오.

귀하의 민원이 특정 학생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1)** 해당 학생의 이름과 주소 및 **(2)** 해당 학생이 다니는 학교 및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을 기재해 주십시오.

민원서를 OSPI 평등 및 시민권 담당 사무소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메일: Equity@k12.wa.us | 팩스: 360-664-2967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

Equity and Civil Rights Office,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PO Box 47200, 600 Washington St. S.E., Olympia, WA 98504-7200

OSPI 민원 제출 마감일

귀하는 담당 교육구 또는 학교측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문을 받은 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OSPI에 민원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OSPI에서 상황에 따라 마감일을 연장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단계. OSPI가 귀하의 민원내용에 답변해드립니다.

OSPI 직원이 귀하의 민원을 검토하여 조사를 착수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OSPI 직원이 귀하의 민원 사항을 조사하기로 결정할 경우, 귀하 및 담당 교육구 또는 학교에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중요! 여기서 귀하는 조사를 진행하는 대신 귀하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민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OSPI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완료되지 않았거나 역일 기준 20일 마감일을 넘어 도착한 경우.
- OSPI가 집행하는 시민권 법 위반에 대한 내용이 아닐 경우. 이에 대한 정보는 평등 및 시민권법 사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360-725-6162 | equity@k12.wa.us
- 지역 민원 및 이의제기 과정을 통해 담당 교육구 또는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주, 연방 또는 지역 시민권법 담당 기관이 조사를 이미 수행하였고 OSPI에서도 비슷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⁵ WAC 392-190-075, <http://apps.leg.wa.gov/wac/default.aspx?cite=392-190-065>.



분쟁 해결

OSPI에서 귀하의 민원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이러한 결정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통지서를 귀하에게 발송할 것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OSPI는 결정문을 귀하에게 발송할 것입니다.

1. 이 결정문은 해당 민원에 대한 각 주장을 처리하고
2. 비준수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상세히 기술하게 됩니다.

관련 민원 및 소송

관련 민원 또는 소송이 귀하의 민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담당 교육구 또는 OSPI는 귀하의 가장 최근 민원에 서면으로 답변하기 전 이전 민원이 해결되거나 관련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기타 차별관련 민원 방법

미국 교육부 시민권 담당 사무소(OCR)

OCR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 성별, 장애 및 나이를 이유로 한 공립 학교 내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연방 시민권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별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한 일자로부터 역일 기준 180일 이내에 OCR로 민원을 제출해 주십시오.

206-607-1600 | TDD: 1-800-877-8339 | OCR.Seattle@ed.gov | www.ed.gov/ocr

워싱턴 주 인권 위원회(WSHRC)

WSHRC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 시설 및 직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워싱턴 주 차별 금지법(Washington Law Against Discrimination, RCW 49.60)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한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원을 WSHRC로 제출해 주십시오.

1-800-233-3247 | TTY: 1-800-300-7525 | www.hum.wa.gov

미국 사법부(DOJ), 교육 기회 부문(Educational Opportunities Section)

DOJ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 성별, 장애 및 종교를 이유로 한 공립 학교 내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시민권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877-292-3804 | TTY: 202-514-0716 | education@usdoj.gov | www.justice.gov/crt/about/edu/

특수 교육, 교사 및 연방 프로그램 관련 민원

특별 교육 분쟁 해결 방법

지역 교육구에서 학생의 개별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에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귀자녀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 제공을 거부하거나 특수 교육과 관련한 다른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공식 민원을 제기하거나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60-725-6075 | TTY: 360-586-0126 | www.k12.wa.us/SpecialEd/Families/Complaints.aspx

교사 및 공인 교육자 관련 민원

공인 교직원이 전문가답지 못한 행위를 하였거나 도덕성이 결여되었거나 개인적으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민원일 경우 특별 민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60-725-6130 | TTY: 360-664-3631 | opp@k12.wa.us | www.k12.wa.us/ProfPractices



차별, 차별적 부당행위 및 성적 부당행위

분쟁 해결

연방 프로그램 시민 민원

교육구 또는 OSPI가 초등 및 중등 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에 따라 연방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주정부 또는 연방 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일 경우 특수 민원 절차가 적용됩니다.

360-725-6100 | TTY: 360-664-3631 | www.k12.wa.us/TitleI/CitizenComplaint.aspx

자세히 알아보기 질문하기 도움 받기

공교육 교육감 사무소(**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평등 및 시민권 담당부

360-725-6162 | TTY: 360-664-3631 | equity@k12.wa.us | www.k12.wa.us/equity

해당 교육구의 시민권 준법준수 전담관에 대한 정보는

www.k12.wa.us/Equity/ContactList.aspx를 방문해 주십시오.

차별 및 부당행위에 대한 상세 정보, 지역구 방침 및 지침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자료는

www.k12.wa.us/Equit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주정부 및 연방 시민권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정보는 참조용으로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OSPI는 성별, 인종, 신념, 종교, 피부색, 국적, 나이, 제향군 명예 제대 또는 군대 상태, 성별 표현 또는 정체성 등의 성적 기호, 감각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의 존재 여부, 장애인의 안내견 또는 서비스 동물 사용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평등한 이용 권한을 제공합니다. 차별 문제에 대한 질문과 불만 사항은 형평성 및 시민권 사무국(Equity and Civil Rights Director), (360) 725-6162 또는 P.O. Box 47200; Olympia, WA 98504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교육 교육감 사무소

평등 및 시민권 사무소

페이지 6 / 6